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285호

2023. 6. 16.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023-85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023-986호 2023년 스마트 안심부스(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5
- 삼척시 공고 제2023-989호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
- 삼척시 공고 제2023-991호 2023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 시행 공고 ----- 15
- 삼척시 공고 제2023-997호 삼척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18
- 삼척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3-28호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6
- 삼척시보건소 공고 제2023-41호 삼척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3

공 람									
--------	--	--	--	--	--	--	--	--	--

삼척시 고시 제2023-85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6. 16.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731-1 외 1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353-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731-1	20230616	신규 부여	20090626	역사인물이승휴의호 (동안)활용
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353-1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729-1	20230616	신규 부여	20090626	역사인물이승휴의호 (동안)활용
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353-1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729	20230616	신규 부여	20090626	역사인물이승휴의호 (동안)활용
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353-1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737-4	20230616	신규 부여	20090626	역사인물이승휴의호 (동안)활용
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353-1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737-3	20230616	신규 부여	20090626	역사인물이승휴의호 (동안)활용
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353-1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737-2	20230616	신규 부여	20090626	역사인물이승휴의호 (동안)활용
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353-1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737-1	20230616	신규 부여	20090626	역사인물이승휴의호 (동안)활용
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353-1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737	20230616	신규 부여	20090626	역사인물이승휴의호 (동안)활용
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338-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305-103	20230616	신규 부여	20090626	역사인물이승휴의호 (동안)활용
1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구덕면 매원리 746-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구덕면 궁촌길 455-151	20230616	신규 부여	20090626	행정구역명 사용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10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나한정길 93-126	20230616	신규 부여	20090626	지역지명(지형지물) 사용
1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60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고내로 425	20230616	신규 부여	20090626	행정구역명복합활용 (고천리,내미로리)
1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210-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4041	20230616	신규 부여	20090807	지역적 특성반영
1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구덕면 장호리 300-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구덕면 장호1길 32	20230616	신규 부여	20090626	일련번호방식명칭사 용(장호길분기)
		이	하	여	백	

삼척시 공고 제2023-986호

2023년 스마트 안심부스(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 및 시 방문객을 보호하고 위험 요소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및 신속·정확한 상황전파를 위하여 2023년 스마트 안심부스(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2일

삼척시장

1. 행정예고 내용

2023년 스마트 안심부스(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목적 : 신속·정확한 상황전파를 통한 능동적인 대처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 안심부스(CCTV)를 설치하고자 함.

4. 설치장소 : 2개소

- 남양동 176-6 일원(진주초교 풋살경기장 부근)
- 성남동 167-18 일원(삼척 청소년수련관 부근)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6. 12. ~ 7. 1.(20일간)

6. 행정예고방법 : 삼척시 홈페이지(<http://www.samcheok.go.kr>)

7. 촬영시간 및 범위 : 연중 24시간, 시설주변 200m 내외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삼척시청 재난안전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3. 6. 12. ~ 7. 1.(20일간)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기준)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대학로 81,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안전도시팀 (☎033-570-3893, FAX 033-570-3178)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

의견 제출서

공 고 명	2023년 스마트 안심부스(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2023년 삼척시 스마트 안심부스(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삼척시 공고 제2023-989호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삼척시장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지역 생산자 대표 위원 자격을 각 산업별로 명시하여 구체화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항 추가

나.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2조)

- 지역의 생산자 대표 자격을 각 산업별로 명시하여 구체화

다. 기부 활성화 지원 조항 신설(안 제24조)

-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 및 예산 지원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7월 3일까지 삼척시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총무과
- 2) 전화 : 033-570-3239
- 3) 팩스 : 033-570-3133
- 4) 전자우편 : fiesta@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 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붙임 1]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를 “위임한 사항과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생산” 을 “농·수·축산 및 임업 등의 단체를 대표하거나, 이와 관련된 생산” 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기부 활성화 지원)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 및 상품권 등 경품(시상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활동 및 공모전
2.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동기부여를 위한 행사
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4.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p> <p>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지역의 <u>생산</u>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p> <p>5.·6. (생략)</p> <p>③ ~ ⑤ (생략)</p> <p><신설></p>	<p>제1조(목적) ----- ----- ---- 위임한 사항과 <u>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u>를 위하여 ---- -----.</p> <p>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농·수·축산 및 임업 등의 단체를 대표하거나, 이와 관련된 생산</u> -----</p> <p>5.·6.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24조(기부 활성화 지원) 시장은 <u>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u></p>

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 및 상품권 등 경품(시상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활동 및 공모전
2.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동기 부여를 위한 행사
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4.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붙임 2]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붙임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3-991호

2023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 시행 공고

2023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산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산림소유자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삼 척 시 장

1. 사 업 명 : 2023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
2. 사 업 기 간 : 2023년 7월 ~ 9월
3. 사 업 내 용 : 조림목의 건전한 생장을 도모하고자 조림지 내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는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
4. 사업대상지 : 삼척시 일원(붙임 대상지 내역 참조)
5.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2023.6.13. ~ 7.13.)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 가. 공고기간 중 대상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 동의여부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서면 또는 구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나. 위 공고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대행추진
7. 기타사항 : 실시설계 결과 사업면적 및 대상지는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사항은 삼척시청 산림과(☎ 033-570-3925)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2023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 대상지 내역 1부. 끝.

(삼척) 시청공고

2023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 대상지 내역

연번	사업 대상지				지적	사업면적
	읍면동	리	지번			
계			47필지		208.90	93.82
1	노곡면	우발리	산	107	3.20	3.00
2	도계읍	황조리	임	108	0.54	0.05
3	도계읍	황조리	임	108	0.54	0.05
4	도계읍	황조리	임	108	0.54	0.05
5	도계읍	늑구리	산	171-1	0.36	0.32
6	노곡면	우발리	산	20	1.78	1.37
7	노곡면	우발리	산	108	1.38	1.10
8	도계읍	황조리	산	94	2.18	1.80
9	도계읍	늑구리	임	412	0.25	0.08
10	도계읍	마교리	산	62	1.68	1.67
11	하장면	장전리	산	19	8.97	7.50
12	도계읍	점리	산	33	1.83	1.60
13	도계읍	점리	산	166-1	9.72	2.00
14	도계읍	점리	산	166-1	9.72	2.00
15	도계읍	점리	산	107	3.91	0.14
16	노곡면	상마읍리	산	29	1.81	1.62
17	조비동		산	372-2	66.34	13.40
18	미로면	상거노리	산	103	7.33	6.20
19	미로면	상거노리	산	131	1.02	0.45
20	미로면	상거노리	산	132	3.50	2.30
21	도계읍	마교리	산	61	2.62	1.65
22	노곡면	여삼리	산	132-2	0.24	0.24
23	도계읍	마교리	산	57-1	17.83	10.81
24	도계읍	늑구리	산	9	0.50	0.35
25	노곡면	고자리	산	87	1.21	1.10
26	도계읍	황조리	산	95	1.07	1.00
27	도계읍	늑구리	산	102-4	0.25	0.04
28	도계읍	늑구리	산	71	2.03	1.70
29	도계읍	늑구리	산	65	0.96	0.80
30	도계읍	늑구리	산	21	0.22	0.12
31	도계읍	점리	산	166-1	9.72	2.00
32	하장면	장전리	산	86-1	6.87	5.60
33	노곡면	여삼리	산	130-1	0.99	0.99
34	노곡면	여삼리	산	130-3	0.33	0.30
35	노곡면	여삼리	산	285	2.33	1.90
36	노곡면	여삼리	산	132-3	0.76	0.73

37	노곡면	여삼리	산	133	3.37	2.47
38	노곡면	여삼리	산	135	1.23	1.15
39	도계읍	황조리	산	92	2.18	2.15
40	도계읍	황조리	임	73-1	0.52	0.25
41	도계읍	점리	산	175-1	0.14	0.10
42	도계읍	황조리	산	90-4	3.69	1.20
43	도계읍	점리	산	166-1	9.72	2.00
44	도계읍	점리	산	16	2.03	2.00
45	도계읍	황조리	산	90-4	3.69	1.20
46	가곡면	오목리	산	9	3.44	1.36
47	노곡면	여삼리	산	293	4.36	3.91

삼척시 공고 제2023 - 997호

삼척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삼척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삼척시장

1. 제안이유

저소득층 가구 등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그 비용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 다. 지원신청, 지원한도, 예산확보(안 제4조부터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 상수도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상수도사업소
- 전 화 : (033) 570-3535 ○ FAX : (033) 570-3170
- 전자우편 : kkm6035@korea.kr

4. 그 밖의 사항

-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삼척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 등에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삼척시에서 시행하는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주거 점유형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1. 자가
2. 주택 전체를 무료로 임차한 가구(단, 주택소유자가 지원대상의 직계 존·비속이거나 형제·자매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③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범위) 급수공사에 필요한 정액공사비와 설계수수료는 전액 지원하고 원인자부담금, 관급자재대 등 그 밖의 비용은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신규 급수공사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읍·면·동을 경유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한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신규 급수공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확보) 시장은 비용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하장정수장 급수구역의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에 한하여 소급 적용한다.

[붙임 1]

관계 법령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도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도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계급여
- 2. 주거급여
- 3. 의료급여
- 4. 교육급여
- 5. 해산급여(解産給與)
- 6. 장제급여(葬祭給與)
-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3 - 28호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삼척시장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 확대 및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여 정주의식 고취 및 원활한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
 - 현행 : 하수도 사용료 지원
 - 변경 : 상·하수도 사용료 및 통신요금 지원
- 나. 심의위원회의 기능 명확화

3. 입법예고기간 : 2023. 6. 13. ~ 7. 3.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하수도사업소
- 전화 : 033-570-3616 ○ FAX : 033-570-3192
- 전자우편 : gus6696@korea.kr

5.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붙임 1]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주변지역이 경우”를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상·하수도 사용료 및 통신요금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8조제1호 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범위”를 “주변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업, 규모, 범위 등 심의결정”을 “수립·변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원계획의 변경 또는 조정”을 “지원사업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사업, 규모, 범위 등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1. 주변지역 -----

 --
2. ----- 수립·변경-----

3. 지원사업 결정-----

4.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

[붙임 2]

관계 법령

□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2. (생략)
-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 4. ~ 8. (생략)
-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 9의2. (생략)
- 10. (생략)
- 11.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12. ~ 15. (생략)

□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생략)

[붙임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 자치법규명 :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의견제출자 :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보건소 공고 제2023 - 41호

「삼척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삼척시장

삼척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사항 반영(안 제1조, 제3조부터 제5조)
-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3. 의견제출

- 삼척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3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라.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sanche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2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척주로76(남양동) 삼척시청 보건정책과
- 전 화 : 033-570-4644
- 팩 스 : 033-570-4169
- 전자우편 : yidan@korea.kr

- 붙임 1. 삼척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삼척시조례 제 호

삼척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34조제2항”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 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 제1항	10,000	20,000	30,000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1호	1,000	2,000	3,000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2호	1,000	2,000	3,00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34조제3항에 따른 ----- ----- ----- -----.</p>
<p>제3조(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제3조(부과기준) ----- ----- 제34조제1항 및 제2항----- -----.</p>
<p>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시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p>	<p>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 ---- 법 제34조제3항----- ----- -----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과태료의 처분통지)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에 의한다.</p>	<p>제5조(과태료의 처분통지)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 ----- -----.</p>
<p>② ~ ④ (생략)</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 조례명 : 「삼척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검토의견서	
	수정안	검토사유